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늘푸름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및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장이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이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교원위원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늘푸름유치원은 아래 [표1]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 (1) 2018~2019학년도 중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규정에 초과하여 구성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였으며,
- (2) 2018~2020학년도 중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구성 비율을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하는 등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다.

[표1] 늘푸름유치원 2018~2020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

학년도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위원수 합계 (C=A+B)	적정 위원수	적정비율		비고
	위원수 (A)	비율	위원수 (B)	비율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2018	5	56%	4	44%	9	8	30~40	60~70	
2019	4	44%	5	56%	9	8			
2020	5	63%	3	38%	8	8			

※ 내역은 늘푸름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늘푸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부정당 채주에게 금전 지급)
 기관명 늘푸름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5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할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같은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늘푸름유치원은 아래 [표2]와 같이 감사 대상기간인 2018~2020회계연도 중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총 25건, 금1,524,290원에 해당하는 내역을 교직원 개인 명의로 업체에 선 결제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교직원 계좌로 사후에 입금하는 등 부정당 채주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늘푸름유치원 부정당채주 지급 내역

[단위: 원]

연번	거래일시	출금계좌	내역	수취인성명	입금금액	비고
1	2018.03.08	000-000-000000	식대,팬시소품	○○○	38,020	
2	2018.05.10	000-000-000000	조리실장튀김팬	○○○	35,000	
3	2018.07.10	000-000-000000	주방국자주걱	○○○	10,900	
4	2018.09.10	000-000-000000	은하수놀이주머니	○○○	6,050	
5	2018.09.10	000-000-000000	청소실장호스	○○○	4,000	

연번	거래일시	출금계좌	내역	수취인성명	입금금액	비고
6	2018.09.10	000-000-000000	7세숲체험재료	○○○	4,500	
7	2018.09.14	000-000-000000	가을소풍생수	○○○	4,000	
8	2018.09.14	000-000-000000	가을소풍생수	○○○	6,000	
9	2018.10.08	000-000-000000	후라이팬2개	○○○	40,000	
10	2018.12.11	000-000-000000	별님축제준비물	G마켓○○○	7,180	
11	2019.03.06	000-000-000000	믹서기수리비	○○○	27,000	
12	2019.03.11	000-000-000000	유치차자석간판	○○○	90,000	
13	2019.03.22	000-000-000000	핸드페이퍼타월	○○○	39,800	
14	2019.04.09	000-000-000000	봄식물씨앗화분	○○○	29,000	
15	2019.12.04	000-000-000000	앰프스피커	G마켓○○○	145,000	
16	2019.12.05	000-000-000000	체육실난방기	G마켓○○○	600,000	
17	2020.01.28	000-000-000000	요리활동쌀강정	○○○	9,290	
18	2020.01.31	000-000-000000	6세문학활동책	○○○	9,100	
19	2020.02.10	000-000-000000	리듬악기졸업선	G마켓○○○	159,900	
20	2020.02.21	000-000-000000	칼갈이숫돌	○○○	24,000	
21	2020.03.03	000-000-000000	별님반감각재료	○○○	12,900	
22	2020.04.27	000-000-000000	트래핑2L4개	G마켓○○○	16,500	
23	2020.11.25	000-000-000000	급식투명가림막	○○○	145,250	
24	2021.01.19	000-000-000000	도마값조리실장	○○○	10,900	
25	2021.02.15	000-000-000000	미끄럼방지매트	○○○	50,000	
합계					1,524,290	

※ 금액은 늘푸름유치원의 현금출납부 및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늘푸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공과금 연체료 납부)
 기관명 늘푸름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5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같은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늘푸름유치원은 아래 [표3]와 같이 감사 대상기간인 2018~2019회계연도 중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연체료 명목으로 총 8건, 금164,050원에 해당하는 내역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3] 늘푸름유치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연체금 납부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적요	연체금 종류		연체금 합계	비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2018/04/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840	60	900	
2018/05/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9,590	1,440	21,030	
2018/07/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990	140	2,130	

지출일자	적요	연체금 종류		연체금 합계	비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2018/08/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9,950	1,470	21,420	
2019/01/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1,150	2,240	33,390	
2019/05/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9,880	3,380	43,260	
2019/06/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4,240	2,900	37,140	
2020/02/1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410	370	4,780	
합계		152,050	12,000	164,050	

※ 금액은 늘푸름유치원의 현금출납부 및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 상기 연체금 납부액 금164,050원 2021.8.13.자 보전 조치 완료

조치할 사항 늘푸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연말정산 미 실시)
기 관 명 늘푸름유치원
내 용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지급명세서를 해당 지급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에 따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일용근로자 및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 제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 따라 고용보험법은 적용 제외 근로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늘푸름유치원은 아래 [표4]와 같이 감사대상기간인 2018~2019학년도 중 근로한 교직원의 일부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사대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각각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4] 늘푸름유치원 교직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연말정산 미실시 내역

[단위: 원]

회계연도	성명	직책	급여총계	원천징수 여부 (O,X)							연말정산	비고
				소득세	주민세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양호보험	고용보험		
2018	○○○	○○○○	13,200,000	X	X	X	X	X	X	X	X	
2019	○○○	○○○○	16,032,000	X	X	X	X	X	X	X	X	
2018	○○○	○○○○	14,400,000	X	X	X	X	X	X	X	X	
2019	○○○	○○○○	14,400,000	X	X	X	X	X	X	X	X	
2019	○○○	○○○○	12,100,000	X	X	X	X	X	X	X	X	
2018	○○○	○○○○	16,800,000	X	X	X	X	X	X	X	X	
2019	○○○	○○○○	19,500,000	X	X	X	X	X	X	X	X	

※ 금액은 늘푸름유치원의 현금출납부 및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늘푸름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신고 누락된 교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